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신규과제 신청요강

201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국 연 구 재 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19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19. 5. 20(월) 09:00 ~ 2019. 5. 30(목) 18: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19. 5. 20(월) 09:00 ~ 2019. 5. 31(금)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19.5.30) 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목 차

I. 2019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1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1
3. RLRC 중점 추진방향	2
4. 2019년 추진 일정	4

II. 신규과제 신청

1.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5
2. 연구과제 및 핵심연구원 구성	8
3. 주관연구기관 지원 및 협약사항	9
4. 신청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10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1
6. 신청기간	11
7. 지자체 연구비 매칭 및 기업참여 관련 주요사항	12
8. 기타사항	13

III.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기본방향	14
2. 평가 절차 및 방법	14
3. 평가 주안점	14
4. 가점 제도	15
5. 중복성 검토	15

I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15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16

V. 향후 관리사항

1. 연차점검, 단계 및 최종평가 등	17
2. 성과 관리	18
3. 지원중단 과제관리	18

VI. 기타 사항

붙임1.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세부 체크리스트)	22
2.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FAQ	23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26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1
5. 선도연구센터 지원목록	39

1 사업 목적 및 내용

-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지속가능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지역 혁신성장 분야에 특화된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지원

* RLRC: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선도연구센터를 통해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며, 연구성과를 지역에 확산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 대학원(석/박사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대학*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으로,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은 제외

- ☐ (지원규모) 연15억 이내(간접비 포함, 총연구비 97.5억원 이내), 총7년(4+3)

※ '19년도 센터당 750백만원 지원(6개월)

※ 2단계(5년차 이후) 연차별 지원연구비 및 총 지원연구비는 지자체 매칭규모(2단계)에 따라 변동 가능. 총지원기간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 결정 예정

- ☐ (선정규모) 총4개 대학(권역별* 1개 대학)

* 지역의 연구역량을 감안, 비수도권을 4대 권역(①부산·울산·경남 ②대구·경북·강원 ③광주·전북·전남·제주 ④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구분

- ☐ (지원분야) 지역수요 기반, 권역 혁신성장 선도분야

권역	'19년도 지원분야 (권역 혁신성장 선도분야)
① 부산/울산/경남	▲고부가가치 기계 부품/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친환경 수송
② 대구/경북/강원	▲수열에너지 ▲자율형 자동차 부품/소재 ▲지능형 ICT 융합
③ 광주/전북/전남/제주	▲나노탄소 기반 에너지소재 ▲디지털 생체의료 ▲블록체인 ▲수소에너지 생산용 첨단핵심 소재/부품
④ 대전/충북/충남/세종	▲바이오 의약 소재 및 진단 ▲인공지능형 메모리 부품/소재 ▲정밀의료 ▲조직재생

※ 주관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권역의 모든 분야에 지원가능

※ '20년도 지원분야는 '20년도 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 및 집단연구신청 요강 등을 통해 공지 예정

<'19년도 신규과제 지원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선정과제 수		총 4개 (권역별 1개)
연구비	1단계 (1~4년차)	연 15억원 이내 (간접비 포함) ※ 19년도 연구비: 7.5억원 이내 (총6개월)
	2단계 (5~7년차)	정부출연금 10억원 이내 + 지자체 매칭 + 정부 역매칭 출연* ※ 2단계(5년차 이후) 연차별 지원연구비 및 총 지원연구비는 지자체 매칭규모(2단계)에 따라 변동 * 정부의 역매칭 규모는 지자체 투자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출연할 예정임. '19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정부의 2단계 역매칭은 최대 10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나 '23년도 예산 반영 현황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23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공지 예정)
연구기간	1단계 (1~4년차)	'19.9.1. ~ '23.2.28. (총42개월) * 1차년도: '19.9.1. ~ '20.2.29. (총6개월)
	2단계 (5~7년차)	'23.3.1. ~ '26.2.28. (총36개월)

* 2단계 지원은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3 RLRC 중점 추진방향

① 지역 내 역량 결집을 통한 자생적 혁신성장 기반 구축

- **(연구거점)** 지역별 연구역량을 감안, 비수도권을 4대 권역*으로 구분, 동일 권역 내 우수 연구자들의 응집된 창의성/도전성에 기반한 센터 구축
* ①부산·울산·경남 ②대구·경북·강원 ③광주·전북·전남·제주 ④대전·세종·충북·충남
- **(연구자 구성)** 과제책임자* 등 핵심연구원(8명 이내)의 70% 이상을 동일권역 내 연구원(대학 또는 연구소 등 소속)으로 구성
* 주관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
※ 타권역 교수/연구원 및 5대 과기특성화대학 교수 참여 가능(30% 이하)
- **(사업 참여 완화)** 타대학 선도연구센터(ERC, SRC 등)에 참여 중인 핵심 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도 RLRC 사업에 신청·참여 가능*
* 단, RLRC 사업 전념을 위해 1차년도 수행기간 동안('19.9~'20.2)에만 한시적으로 중복 참여 허용하되 2차년도 부터는 RLRC만 참여토록 협약변경 필요
※ 참여 중인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이 연구개시일 기준('19.9.1) 기준 10개월 이내('20.6.30)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 **(산학 연계 강화)** 지역 내 혁신주체간 연계성 강화(기업참여)를 통해 센터의 우수성과 창출 가속화 기반 구축
※ 과제 1단계(1년차~4년차) 지역(권역) 내 중소·중견기업 참여(대기업 불가)는 자율적으로 하되, 2단계(5년차~7년차)에서부터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는 의무 사항(대기업 불가)

② 지역밀착형, 혁신연구거점을 통한 지방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

- **(지역 수요 기반 기획)** 기획단계에서 수요(혁신분야)를 바탕으로, 권역별 혁신성장 선도 분야를 확정하여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 **(지역 주도 과제 관리)** 지역기업·R&D전문기관이 연차점검 등에 참여, 센터의 지역 내 경제/사회적 성과 극대화 도모

※ 한국연구재단(평가단)과 함께 과제 현장컨설팅 추진 등

③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 촉진

- **(신진연구자 양성)** 센터인력(총8인 이내, 참여연구원 제외) 구성 시 20% 이상을 신진연구자(박사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39세 이하)로 구성
- **(박사후 연구원 참여 확대)** 주관연구기관이 참여연구원 구성 시 박사후연구원(포닥)을 3명 이상 채용*(참여율 50% 이상)

* 과제신청 시 참여연구원 구성 계획 제출(연구개시 후 6개월 내(1차년도) 채용)

- **(전임 교원 충원 유도)** 센터 관련 전임교원(조/부/정교수) 1명 이상 채용

* 과제신청 시 채용 계획 제출(2단계(5년차) 연구개시 전까지 채용), 채용 인원수 만큼 핵심연구원수(現 최대 8명) 증원 인정

- **(지역인재-지역 기업 동반혁신 성장)** RLRC에 참여 중인 연구원을 참여기업이 신규채용 시 우대

※ 과제신청 시(연구개발계획서(신규/단계) 제출 및 향후 이행여부 점검

- **(대학원생 참여 확대)** RLRC에 참여연구원으로 대학원생이 참여 시 과제참여율을 50% 이상 설정(2차년도부터 참여율 유지 필요)

※ 과제신청 시 협약서 징구 및 향후 이행여부 점검

④ 우수연구성과 지역 확산 및 지속창출 기반 구축

- **(성과 이어달리기)** RLRC에서 창출한 우수성과가 지역의 혁신성장에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참여 의무화(2단계부터 참여)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며 과제 1단계(1년차~4년차)부터 기업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님

- 참여(예정)기업의 연구비 매칭을 의무화(2단계)하고, RLRC에 참여 중인 연구원을 참여기업이 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기업 현금부담금(2단계 매칭)으로 인정

※ 과제신청 시 매칭 또는 연구원 채용 계획 제출, 향후 이행여부 점검

- **(지역 주도 성과창출)** RLRC센터의 자립화 도모 및 우수연구성과 지속 창출을 위해 2단계부터는 지자체 매칭을 의무화하고,
 - 지자체의 (2단계)R&D투자규모를 감안, 정부의 2단계(5~7년차) 출연금(역매칭) 규모 확정/지원*
 - * (예시) 정부의 2단계 연차별 지원금은 10억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되, 지자체 투자규모(5억)와 동일한 규모로 추가 지원(5억원 추가지원, 정부 총15억)
 - ※ '19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정부의 2단계 역매칭은 최대 10억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나 '23년도 예산 반영 현황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23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공지 예정
- **(정부 조력, 성과확산)** RLRC 연구원(핵심/참여)이 기술창업 및 기술이전을 위해 과기정통부 관련 사업에 지원* 시 우대
 - * 실험실창업지원사업 등에 지원 시 가점 등을 부여 예정. 추후 관련사업 공고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안내 예정
 - 우수 연구성과 조기 창출 등을 위해 컨설팅 개념의 현장점검 실시(1단계 2년차, 2단계 1년차 의무화, 필요 시 매해 실시)
- **(기술료 재투자 확대)** 주관연구기관이 RLRC에서 창출한 R&D성과를 기반으로 제3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받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총 기술료의 15%이상을 RLRC의 연구개발 재투자 용도로 사용 의무화(대학→센터)
 -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서 제출

4 2019년 추진 일정

일 정	주요 내용
2019. 5. 20(월) ~ 5.30(목)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9. 5. 20(월) ~ 5.31(금)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가간
2019. 7월 초	1차평가(토론평가) 실시
2019. 7월 초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통보
2019. 7월 말	2차평가(발표평가) 실시
2019. 8월	이의신청 접수마감 및 검토
2019. 8월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2019. 9. 1.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II 신규과제 신청

1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 연구책임자 등 핵심연구원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위반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1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이공계 대학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대학*

* 지역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으로,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은 제외

2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책임자 및 핵심연구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 필요

* ①그룹 책임자로 참여 ②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③과제 참여율 60% 이상

- **(그룹 책임자)** 국내 대학 교원, 국내 공공·민간연구소 선임 연구원 이상으로 각각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

- **(핵심연구원)** 연구계획서 상의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책임자를 포함한 교수급의 연구원*을 의미하며, 과제 참여율을 20% 이상 유지 필요 (주관연구책임자는 60% 이상 참여율 유지)

< 교수급 연구원 현황 >

구분	국내교원	공공/민간연구소
교수급 연구원	(전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비전임) 연구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Post-Doc 등	

※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 책임자를 제외한 교수급 연구원은 비정규직도 가능

※ 한시적으로 사업 중복참여를 허용하며 RLRC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소 과제 참여율 유지는 2차년부터 적용

< 최소 과제 참여율 적용 대상자 >

구분	①핵심연구원	②공동연구원	비 고
사업명	선도연구센터 (SRC, ERC, MRC, CRC)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포함) 대학중점연구소 (교육부 소관)	1인 1과제 신청 제한이 없는 참여연구원은 제외

3 신청 및 참여 제한

【정부R&D 공통사항 적용】

- **(참여과제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만 연구책임자에 해당

3책 5공 관련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 **추가 예외 사항**

1.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2016~20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2. '16년 이후 기초연구사업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9.5.29)까지 종료되지 않는 경우 과제신청 및 참여 불가

【2019년도 기초연구사업 공통사항 적용】

- **(신규신청 제한)** '19년도 상반기에 공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지원사업에
 -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핵심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신청한 연구자의 경우 RLRC 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핵심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집단연구지원사업 유형별 RLRC 신청/참여 제한 연구원 현황>

선도연구센터 (SRC, ERC, MRC, CRC)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포함) 대학중점연구소 (교육부 소관)	비 고
주관연구책임자 그룹장, 핵심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1인 1과제 신청 제한이 없는 참여연구원은 제외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지원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에
 - ①주관연구책임자 또는 ②핵심연구원 또는 ③공동연구원으로 수행 중인 연구자는 RLRC 사업에 연구책임자 또는 핵심연구원으로 신청불가
 - 다만, 참여 중인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이 연구개시일 기준('19.9.1.) 기준, 10개월 이내('20.6.30.)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 신청 및 참여 가능

【2019년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적용】

- **(참여 완화)**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연구자*인 경우에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RLRC 사업에 연구책임자 또는 핵심연구원으로 신청 및 참여가능

* ▲주관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 ▲공동연구원(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 **(예외사항)** 타대학 선도연구센터(ERC, SRC, MRC, CRC)에 참여 중인 핵심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은 RLRC 사업에 신청 및 참여 가능*

* 1차년도 수행기간 동안('19.9. ~ '20.2.)에만 한시적으로 중복 참여를 허용하되, 2차년도부터는 RLRC만 참여토록 협약 변경 필요

2 연구과제 및 핵심연구원 구성

① 연구과제 구성

- 2~3개의 그룹으로 구성*
- ※ 그룹의 핵심연구원 수는 자율적으로 배정

② 핵심연구원 구성

- 센터 당 핵심연구원은 8명 이내로 구성*
 - * 핵심연구원의 자격은 5페이지 참조 요망 / 동일 권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이 2단계에 핵심연구원으로 참여 시 그 인원 수 만큼 핵심연구원 수 증원 / 주관 연구기관이 센터 관련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 시 채용인원 수 만큼 핵심연구원 수 증원
- 핵심연구원의 70% 이상은 반드시 동일 권역 내 연구원으로 구성
 - 핵심연구원을 동일 권역 내에서 70% 이상 확보한 경우, 나머지 핵심연구원(30% 이하)을 5대 과기특성화대* 교수 및 타권역 소속(수도권 포함) 교수급 연구원**으로 구성 가능
 - *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 교수급 연구원에 대한 자격은 5페이지 참조 요망
- 핵심연구원 구성 시, 신진 연구자*를 20% 이상 구성
 - * 이공학 분야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12. 1.1 이후 취득자) 또는 만 39세 이하(1979.1.1 이후 출생자)인 연구자

< 핵심연구원 구성 예시 >

핵심연구원수	동일 권역 연구자	他 권역 연구자 (5대 과기특성화대 포함)
8명으로 구성 시	최대 8명 ~ 최소 6명 (신진연구자 2명 포함)	최대 2명
7명으로 구성 시	최대 7명 ~ 최소 5명 (신진연구자 2명 포함)	최대 1명

③ 참여연구원 구성

- 연구개시 6개월 이내(~'20.2.29)에 반드시 박사후 연구원 3명 이상을 참여 연구원으로 구성(참여율 50% 이상)
- 참여연구원으로 대학원생이 참여 시, 과제참여율을 2차년도부터는 최소 50% 이상 유지

3 주관연구기관 지원 및 약속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의무 사항을 연차점검/단계평가 시 점검하여 미 이행 시 차년도 간접비 감액 등 추진*

* 추후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계획 수립 시 자세한 사항 안내 예정

1 연구인력 및 운영인력 지원

- 선도연구센터의 조기정착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 극대화 등을 위해
 - 적정 수준의 핵심연구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신규교수 채용 시 센터관련 교수의 우선 충원 방침 마련
 - 센터 설치와 동시에 1명 이상의 센터 전임행정요원 지원 의무화
 - ※ 주관연구기관이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행정요원 인건비 부과 금지

2 전용공간 제공

-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RLRC를 위한 전용공간(최소 495m² 이상)* 배정
 - *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실, 참여교수 연구실, 행정실, 세미나실 및 연구를 위한 공동기기실
 - ※ 주관연구기관이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공간 사용료 부과 금지

3 전임 교원 충원

- 연구개시 1단계(~'23.2.28) 내에 센터 관련 전임교원을 1명 이상 채용
 - ※ 채용 인원수 만큼 핵심연구원수(現 최대 8명) 증원 인정

4 기술료 재투자

- 주관연구기관이 RLRC에서 창출한 R&D성과를 기반으로 제3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받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기술료의 15%이상을 RLRC의 연구개발 재투자 용도로 사용

5 연구기기

- 연구여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센터가 필요로 하는 공동 활용기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4 신청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사항에 대해 **요건심사 예정**으로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요망**

※ 붙임1의 세부체크리스트를 통한 요건사항 최종확인 요망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사항

-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3책5공 초과여부
-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여부

② 2019년도 기초연구사업 공통사항

- ▶ 2019년도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핵심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여부
- ▶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또는 핵심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현재 수행여부

③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신청요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 신청마감일 당시 주관연구기관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 여부
- ▶ 연구기간동안 재직보장 여부 / 연구책임자의 그룹책임자 여부
- ▶ 연구책임자 과제 최소 참여율 60%이상 여부 및 전체 과제 참여율 100% 초과 여부

○ 그룹책임자 및 핵심연구원 자격

- ▶ 그룹책임자는 국내대학 교원 또는 국내 공공·민간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 소속 기관 정규직
- ▶ 핵심연구원 교수급 연구원 여부(연구책임자 및 그룹책임자가 아닌 핵심연구원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자도 가능)
- ▶ 핵심연구원(그룹책임자 포함) 과제 최소 참여율 20% 이상 여부 및 과제 참여율 100% 초과 여부

④ 기타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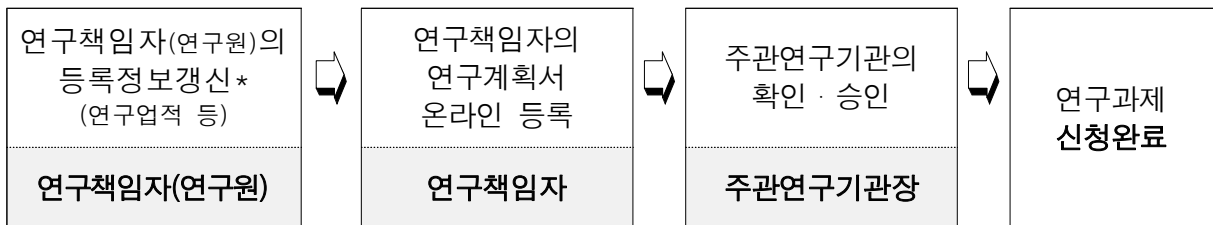
- ▶ 센터 내 그룹 2~3개 구성 및 핵심연구원 8명 이내 구성 여부(신진연구자 최소 20% 이상)
- ▶ 동일 권역 내 핵심연구원 70% 이상 구성 여부
- ▶ 주관연구기관 지원 확약서
-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지원확약서 및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금 확약서

※ 이외에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건 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정보 갱신 요망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본문) 2019년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사업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 (첨부자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 온라인 제출 매뉴얼은 접수 전 별도 공지

6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19. 5. 20(월) 09:00 ~ 2019. 5. 30(목) 18: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19. 5. 20(월) 09:00 ~ 2019. 5. 31(금)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19.5.30.(목)) 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7 지자체 연구비 매칭 및 기업 참여 관련 주요 사항

① 지자체 연구비 매칭

- 1단계부터 지자체 연구비 매칭은 자율적으로 하되, 2단계(5년차)부터는 지자체의 연구비 매칭은 의무사항
- 2단계 정부출연금은 10억원 이내의 연구비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되, 2단계 지자체의 연구비 투자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추가 지원 예정*

* (예시) '23년도 지자체 매칭이 5억원인 경우, 정부출연금 15억원(기본 10억원 + 정부 역매칭 출연금(5억원))

※ '19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정부의 2단계 역매칭은 최대 10억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나 '23년도 예산 반영 현황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23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공지 예정

② 기업 참여

- 동일 지역(권역)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1단계부터 참여는 자율적으로 하되, 2단계부터(5년차) 기업 참여는 의무사항임에 유의(대기업 참여 불가)
- RLRC 참여기업이 2단계부터 부담해야 하는 총연구비 규모(1단계에서 기업 부담 규모는 자율)는 다음과 같음

참여 기업 유형	총부담금 (최소 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중견	2단계 총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그룹의 수	기업부담금액의 13% 이상	현물 부담액의 70%이내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중소	2단계 총 정부출연금의 25% ÷ 연구그룹의 수	기업부담금액의 10% 이상	한도 無	한도 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및 별표 4 참조

- 과제 참여연구자의 참여기업 신규 채용 권장
 - 중소·중견기업이 RLRC 참여 연구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신규 고용 인건비(성과급 포함)를 기업의 현금부담금으로 인정
 - 신규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신규채용 주요 내용

- ▶ **(채용조건)** RLRC에 참여 중인 연구원을 참여기업이 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을 권장하며, 채용된 연구원은 소속만 변경(원소속→기업)하고 연구과제 종료 시까지 과제 지속 참여필요
 - ※ 연구원 채용 시 참여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서 제출 필요
- ▶ **(채용시점)** 연구개시 이후부터 연구과제 종료 1년전까지 (2단계부터도 채용 가능) 채용된 연구원에 대해서만 신규 채용된 것으로 인정
- ▶ **(최소고용 유지 기간)** 채용 시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 ▶ **(인건비 범위)** 성과급을 포함한 인건비
- ▶ **(현금부담 감면 범위)** 신규인력 고용 유지기간 동안 계속 감면
 - 1단계부터 채용 시에는 2단계부터 기업 부담금에서 감면
 - 고용된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직 시 감면된 부담금은 환수하지 아니하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 시에는 기업이 감면받은 부담금을 전액 국고 환수
 - *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따름
- ▶ **(채용실적점검)** 연차점검(또는 단계평가/종료평가) 시 신규채용 확인가능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제출

- 기업 참여에 따른 과제 협약·연구개발비 지급 및 과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

8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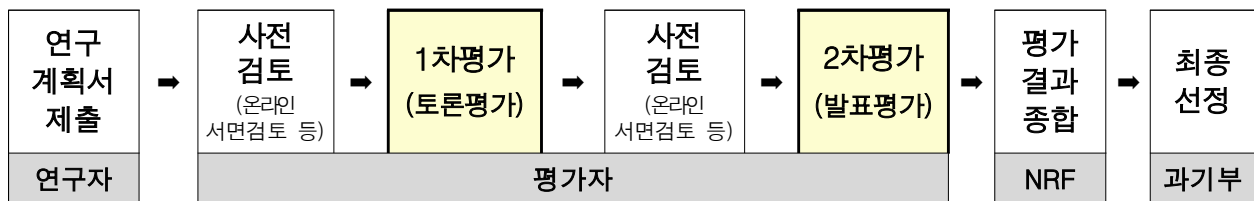
-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 유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기간 내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 불가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기본방향

- 심층토론평가 및 발표평가 실시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목표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강화
- 해당 권역 혁신 성장 견인 가능성을 집중 검토
 - ※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과 함께 분야별 전략성·목적성에 부합되는 과제 선정
- 해당 권역 선도분야에 부합한 지역인재 육성 계획 및 연구성과 지역 확산 계획·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

2 평가 절차 및 방법



※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 과제 수 등에 따라 평가절차 및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주안점(안)

주요 내용	비고
① 권역의 혁신성장분야와의 부합성	여타 선도연구센터 선정평가와 동일하게 심층평가로 진행됨에 따라 별도의 배점 없음
② 연구그룹의 우수성(핵심연구원 역량 및 공동연구수행가능성)	
③ 지역 우수인재 양성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④ 연구 성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⑤ 연구내용·방법의 구체성/적합성 및 창의성/도전성	
⑥ 연구자 자체평가 타당성	

4 가점 제도

- 연구책임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포함) 및 교육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 성과자일 경우 심층평가 시 고려(선정일 부터 3년간 유효)
※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5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I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R&D 처리규정’)」에 따라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 항목)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간접비 계상식 (직접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은 아래 산식을 적용하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

* 처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제8항

- 직접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 × 기관별 간접비율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 기관별 간접비율 × 30%)

※ 기관별 간접비율은 붙임4 참조

□ (연구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1차 년도는 6개월(2019.9.1.~2020.2.29.)분을 지원

□ (지급방법)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 기관간 협약에 따라 연구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 지급 (그룹별로 지급하지 않음)

- ※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그룹형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연구비를 주관 연구기관에 모두 지급하므로,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의 과제담당자와 사전 확인 요망

□ (지급시기)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관리는 「공동관리규정」·「R&D 처리규정」 및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유용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매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 연구책임자는 「공동관리규정 등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으며, 공동관리 시에는 과제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실시 예정

<참고>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관련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 공동관리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 R&D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표준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1 연차점검, 단계 및 최종평가 등

- (현장컨설팅) 우수 연구성과 조기 창출 등을 위해 컨설팅 개념의 현장점검 실시(1단계 2년차, 2단계 1년차 의무화, 필요 시 매해 실시)

※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 및 계획 등은 추후 수립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구분	연차점검		단계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각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	(각 단계별) 단계 종료 2개월 전
	서류	연차실적계획서 온라인 제출/접수	단계보고서(성과소개서 3개 이내 입력 포함) 등을 온라인 제출
내용	- 매년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에 대해 전문가점검 실시		연구목표 달성 수준 및 수행과정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질적수준, 공동(협력)연구수준, 향후 연구계획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등
절차	① 전문가 평가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연구재단 ➡ ② 위원회 심의 단계평가 결과 확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과기정통부 ➡ ③ 통보 연구자 통보 연구재단		
결과 활용	과정중심 평가를 위해 성실수행 여부 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급 등

※ 세부 점검/평가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위 내용은 향후 변경 가능)

□ 최종평가

구분	주요 내용	
보고서 제출	시기	연구 종료 후 45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용 최종보고서 제출
	서류	최종보고서(성과소개서 3개 이내 입력 포함) 등을 온라인 제출
내용	- 연구수행의 성실성 및 연구방법·과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우수성 등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절차	① 전문가 평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성실수행여부 및 연구결과 평가 연구재단 ➡ ② 결과 확정 최종평가 결과확정 과기정통부 ➡ ③ 통보 연구자 통보 연구재단	
결과 활용	-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 ※ 해당 내용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	

※ 세부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위 내용은 향후 변경 가능)

2 성과 관리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소개서는 과제 종료 시 의무적으로 제출함

- 연구수행 시 및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ERND(성과 메뉴)에 수시로 입력
- 다만,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1년 6개월 이내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성과목표 관리제

- 선정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정 후 1년 이내 (연구 개시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주관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 연구주제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 시 차년도 연구비 30% 내외 삭감 (기초연구사업 시행 계획상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2019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2018.11.)』에 따라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확정

〈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

구분		세부내용
신분변동	이직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국내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임명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VI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 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MSI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시일에 파견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③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2018년도부터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미이수 시, 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불가)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이수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 이수기간 : 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교육관련 문의전화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cyber.kird.re.kr> 또는 <http://e.kird.re.kr>
- 교육운영 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교육운영 콜센터 1588-5834, e-kird@kird.re.kr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7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8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9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9.9.1 시행 예정)』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 붙임 1.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세부 체크리스트)
2.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FAQ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5. 선도연구센터 지원목록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3책5공 초과여부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기재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교란에 사유 명시 ※(3책5공 예외과제) 주관기관 신청마감일(2019.5.31.)기준 6개월 이내 종료 (2019.11.30.)과제	아니오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019.5.29.)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아니오
기초연구 집단연구 1인1과제 수행여부	Q> 현재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가 본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타 대학 선도연구센터(ERC, SRC등)에 참여중인 핵심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은 RLRC사업에 신청참여 가능 ※ 참여 중인 집단연구사업이 연구개시일(2019.9.1.) 기준 10개월 이내 (2020.6.30.)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는 참여 가능	아니오
2019년도 기초연구 집단연구 신청여부	Q> 현재 2019년도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또는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신규과제에 신청한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핵심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가 본 선도연구 센터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Q> 연구책임자는 본 선도연구센터 과제 기간 동안 주관기관에서 재직이 보장 됩니까? ※ (양식 A802) 정년이후대책을 기재하였습니까?	예
	Q> 연구책임자는 본 선도연구센터 내 그룹책임자 입니까?	예
	Q> 연구책임자의 과제 참여율이 최소 60% 이상이며, 본 선도연구센터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예
핵심연구원 자격여부	Q> 핵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최소 20%이상이며, 본 선도연구센터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예
기타요건	Q> 선도연구센터 내 그룹은 최소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연구원(연구책임자, 그룹책임자 포함) 은 최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Q> 동일 권역 내 핵심연구원은 7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Q> 핵심연구원 중 신진연구자는 2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Q>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 연구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 참여율은 5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구개시 6개월 이내 참여)	예
	Q> 참여연구원 중 대학원생의 과제참여율이 5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2차년도부터 과제참여율 50% 이상)	예
	Q> 주관기관 확약서를 첨부하였습니까?	예
	Q> 지방자치단체 연구비 지원 확약서를 첨부하였습니까?	예
	Q> 기업의 과제참여 및 연구비 부담 확약서를 첨부하였습니까?	예

Q 2019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후속포함)(교육부))에 기 신청하였습니다. RLRC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불가능합니다.

- 2019년도 신규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또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핵심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는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를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선도연구센터만 지원

Q 현재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 연구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에 연구책임자(또는 핵심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RLRC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수행하고 계신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19.9.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0.6.30.)에 최종종료(단계 종료 아님)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10개월 이내 최종 종료대상 센터가 아닌 경우에도, 타 대학* 선도연구센터(SRC, ERC 등)에 참여 중인 핵심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은 RLRC에 신청 및 참여는 가능하나 수행 중인 타 센터 과제는 RLRC 사업 전념을 위해 RLRC 1차년도 수행기간 동안('19.9 ~ '20.2)에만 한시적으로 중복 참여를 허용을 하는 것이며, RLRC 2차년도부터는('20.3.~) RLRC만 참여토록 기수행 센터의 핵심연구원 변경이 필요합니다.

* 참여 중인 선도연구센터의 주관연구기관이 RLRC 신청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참여 불가능

Q 해당 권역 외 타 권역의 분야에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소재한 권역의 모든 혁신성장 분야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9년도 권역별 혁신성장분야는 신청요강 1페이지 참조)

Q 지자체의 연구비 매칭은 의무사항입니까?

A 1단계(1년~4년차)에서 지자체의 연구비 매칭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2단계(5년차)부터는 지자체 연구비 매칭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연구비 매칭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2단계 정부출연금에 지자체가 매칭하는 연구비 만큼 추가로 지원(역매칭)할 예정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 및 12페이지 참조)

Q 지자체의 연구비 매칭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지자체를 의미합니까?

A 주관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권역 내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 (예시) “A” 대학이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부산시청 또는 울산시청 또는 경남도청 또는 창원시청 등으로부터 지자체의 연구비 매칭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선도연구센터의 그룹책임자도 3책 5공의 연구책임자로 포함되나요?

A 선도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센터장)만 연구책임자에 포함되며, 그룹책임자를 포함한 그 외 연구원은 공동연구원에 해당됩니다.

Q 연구책임자(센터장) 및 핵심연구원의 필수 참여율이 있나요?

A 연구책임자(센터장)의 경우 60%이상, 핵심연구원의 경우 20% 이상 참여율을 계상하셔야 합니다. 참여율은 연구개시일(2019.9.1)을 기준으로 계상하셔야 하며, 계획서 상의 참여율 변경 계획에 유념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차년도 이후 필수 참여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 선도연구센터사업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2019년 선도연구센터의 계획서 분량은 35페이지(1. 연구센터의 필요성 ~ 5. 연구센터의 연구 수행 역량 항목)입니다. 초과 시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글자 크기나 폰트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양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으며, 계획서 양식 내 표 서식 중 오른쪽 상단에 ‘양식A’가 붙어있는 경우 임의로 편집 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Q 선도연구센터사업의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A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라 ‘2억원 초과분 계상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억원 초과분 간접비 계상식 = 2억원 × 기관별 간접비율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 기관별 간접비율 × 30%) * 직접비는 현물, 교비 대응자금,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임.

○ 또한, 과기정통부 소관 처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에 의거하여,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사업의 기업 참여는 필수입니까?

A 연구에 기업 참여 필요에 따라 1단계 참여는 자율적으로 하되, 2단계 참여는 필수 사항이며 기업 부담금(현금, 현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청요강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담기준을 적용한다.

❶ 2019.12.1. 종료되는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되나요?

Ⓐ 2019년 접수 마감일은 2019.5.31.입니다.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2019.11.30. 이전 종료과제는 3책5공 제외 대상이지만, 12월 1일 종료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됩니다.

❶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연구기관이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은 man-month로 연구비만 계상되므로 작성 불필요)

❶ 선도연구센터사업 선정 후 핵심연구원이 변경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 선정 후 1년 이내에 핵심연구원이 변경 시에는 차년도 연구비가 일부(30% 내외) 삭감 될 수 있습니다.

☐ 성과목표 관리제

- 선정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정 후 1년 이내에 주관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 연구주제 변경 등 주요내용 변경 시 차년도 연구비 30% 내외 삭감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상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table><thead><tr><th colspan="2">구 분</th><th>세 부 산 정 내 용</th></tr></thead><tbody><tr><td rowspan="2">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td><td>연봉제 적용기관</td><td>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td></tr><tr><td>연봉제 미적용기관</td><td>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tr><tr><td colspan="2">기 타 기 관</td><td>◦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율</td></tr></tbody></table>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율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율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i>man-month</i>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팜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인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광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6.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7.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인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 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

	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제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17.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7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 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5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6년도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3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6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90
	한국기계연구원	14.3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70
	한국식품연구원	26.9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08
	한국원자력연구원	21.00
	한국전기연구원	8.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49
	한국천문연구원	29.0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42
	한국한의학연구원	23.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46
	한국화학연구원	21.97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2.29
	국가핵융합연구소	30.98
	극지연구소	14.9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42
	세계김치연구소	17.74
	안전성평가연구소	17.12
	재료연구소	9.45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광주과학기술원	26.46
	기초과학연구원	8.5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3.78
	울산과학기술원	27.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67
	한국과학기술원	24.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5.85
	한국세라믹기술원	22.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85
	한국원자력의학원	31.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85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3개)	고등과학원	18.99
	나노종합기술원	21.4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3.71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5.93
	다이텍연구원	18.67
	자동차부품연구원	20.44
	전자부품연구원	24.08
	중소조선연구원	14.56
	한국광기술원	22.9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6.7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7.65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2.35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3.6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19.74
	한국실크연구원	12.74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83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89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08
	삼성서울병원	20.1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9
	한국선급	27.6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38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3.10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5.15	31	국민대학교	28.00
2	가톨릭관동대학교	27.70	32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5.14
3	가톨릭대학교	27.60	33	군산대학교	18.01
4	강남대학교	27.00	34	극동대학교	18.01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35	금강대학교	27.00
6	강원대학교	28.50	36	금오공과대학교	27.65
7	건국대학교	25.30	37	나사렛대학교	16.15
8	건양대학교	27.00	38	남부대학교	23.15
9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21.09	39	남서울대학교	25.00
10	경기대학교	28.00	40	단국대학교	28.90
11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27.00	41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12	경남대학교	28.00	42	대구교육대학교	9.51
13	경북대학교	29.06	43	대구대학교	29.70
14	경상대학교	27.56	44	대구한의대학교	29.00
15	경성대학교	25.82	45	대림대학교	9.33
16	경운대학교	24.67	46	대전대학교	28.00
17	경인교육대학교	29.00	47	대진대학교	27.90
18	경일대학교	29.00	48	덕성여자대학교	29.00
19	경주대학교	19.81	49	동국대학교	28.70
20	경희대학교	27.62	50	동덕여자대학교	28.00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14	51	동명대학교	27.00
22	계명대학교	29.90	52	동서대학교	28.00
23	고려대학교	28.40	53	동신대학교	17.58
24	고신대학교	23.48	54	동아대학교	29.00
25	공주교육대학교	7.13	55	동양대학교	27.00
26	공주대학교	29.00	56	동양미래대학교	10.37
27	광운대학교	28.50	57	동의대학교	27.79
28	광주교육대학교	13.88	58	명지대학교	25.35
29	광주대학교	20.11	59	명지전문대학교	13.49
30	광주여자대학교	18.10	60	목원대학교	28.00
61	목포대학교	19.99	93	수원대학교	26.90
62	목포해양대학교	28.00	94	숙명여자대학교	29.00
63	배재대학교	30.00	95	순천대학교	24.23
64	백석대학교	28.00	96	순천향대학교	23.73
65	백석문화대학교	18.41	97	송실대학교	29.00
66	부경대학교	28.20	98	송실사이버대학교	16.03
67	부산가톨릭대학교	17.46	99	신라대학교	28.00
68	부산대학교	28.20	100	아주대학교	21.45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6.35
70	부천대학교	13.52	102	안양대학교	22.17
71	북한대학원대학교	8.28	103	연세대학교	29.30
72	삼육대학교	28.00	104	영남대학교	27.13
73	상명대학교	28.60	105	영산대학교	29.00
74	상지대학교	26.50	106	오산대학교	28.60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75	서강대학교	23.62	107	용인대학교	26.00
76	서경대학교	23.74	108	우석대학교	27.50
77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29.90	109	우송대학교	9.71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과학대학교	27.00
79	서울대학교	27.84	111	울산대학교	28.70
80	서울시립대학교	25.75	112	원광대학교	28.00
81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3	위덕대학교	30.00
82	서원대학교	28.00	114	을지대학교	16.63
83	서일대학교	12.21	115	이화여자대학교	24.75
84	선문대학교	27.00	116	인덕대학교	25.34
85	성결대학교	7.56	117	인제대학교	27.32
86	성공회대학교	27.00	118	인천대학교	30.00
87	성균관대학교	27.76	119	인하공업전문대학	19.61
88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0	인하대학교	26.43
89	세명대학교	23.55	121	전남과학대학교	14.00
90	세종대학교	27.10	122	전남대학교	28.38
91	세한대학교	26.00	123	전북대학교	27.90
92	수원과학대학교	15.83	124	전주대학교	27.00
125	제주대학교	28.03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43
126	제주한라대학교	5.00	149	한국성서대학교	5.00
127	조선대학교	30.00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23.37
128	중부대학교	21.50	151	한국외국어대학교	29.00
129	중앙대학교	28.34	152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30	중원대학교	29.00	153	한국항공대학교	23.58
131	진주교육대학교	17.52	154	한국해양대학교	29.00
132	차의과학대학교	25.00	155	한남대학교	25.23
133	창원대학교	27.40	156	한동대학교	24.49
134	청운대학교	28.00	157	한라대학교	22.89
135	청주교육대학교	13.36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3.12
136	청주대학교	27.00	159	한림대학교	24.40
137	춘천교육대학교	13.06	160	한밭대학교	30.70
138	충남대학교	30.00	161	한서대학교	28.00
139	충북대학교	27.90	162	한성대학교	26.00
140	평택대학교	15.79	163	한신대학교	22.01
141	포항공과대학교	30.10	164	한양대학교	29.00
142	한경대학교	29.70	165	한양여자대학교	17.23
143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6	협성대학교	29.00
144	한국교통대학교	30.00	167	호남대학교	26.00
145	한국국제대학교	18.20	168	호서대학교	27.90
1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5.40	169	홍익대학교	27.70
14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37			

[별표 3]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 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 이학연구센터 : SRC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비고
'90	수학 물리학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생물과학	위상수학및기하학연구센터 이론물리학연구센터 반도체물성연구센터 유기반응연구센터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센터	경북대 서울대 전북대 서강대 서울대 경상대	기우향 송희성 이형재 윤능민 하영칠 조무제	'99년 종료
'91	수학 물리학 화학 화학 생물과학 지구과학 농수산 기초의학학	대역해석학연구센터 유전체물성연구센터 생리분자과학연구센터 분자과학연구센터 세포분화연구센터 전라광물자원연구센터 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 암연구센터	서울대 부산대 포항공대 과기원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김상문 장민수 김동한 정경훈 정진하 소칠섭 박관화 박재갑	'00년 종료
'95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초미세표면과학연구센터 분자촉매연구센터 호르몬연구센터	연세대 서울대 전남대	황정남 서정현 권혁방	'04년 종료
'98	화학 기초의학학 기초의학학	전자광감응분자연구센터 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 뇌질환연구센터	고려대 이화여대 아주대	진정일 이준승 김승업	'07년 종료
'99	물리학 물리학 수학 기초의학학 농수산 화학	복합다체계물성연구센터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 전산수학연구센터 면역제어연구센터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 분자설계 및 합성연구센터	서울대 동국대 포항공대 울산대 서울대 과기원	오세정 강태원 곽진호 권병세 김병동 김성각	'08년 종료
'00	수학 물리학 물리학 지구과학 화학 기초의학학 생물과학 기초의학학 기초의학학 기초의학학	복잡계통계연구센터 고에너지물리연구센터 스핀물성연구센터 기후환경시스템연구센터 기능성분자집합체연구센터 단백질네트워크연구센터 식물대사연구센터 암전이연구센터 NO라디칼독성연구센터 분자치료연구센터	서울대 경북대 포항공대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경희대 연세대 인하대 성균관대	전종우 손동철 정윤희 강인식 박수문 김유삼 한태룡 노재경 차영남 이제호	'09년 종료
'01	물리학 기초의학학 생물과학	나노튜브 및 나노복합구조연구센터 혈관연구센터 농업식물스트레스연구센터	성균관대 강원대 전남대	박종윤 최종선 정갑채	'10년 종료
'02	물리학 기초의학학 기초의학학 물리학	양자광기능물성연구센터 류마티스연구센터 노화 및 세포사멸연구센터 우주구조와진화연구센터	한양대 가톨릭대 서울대 세종대	이영백 김호연 박상철 강영운	'11년 종료
'03	화학 생물과학	생활성분자하이드리드연구센터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	연세대 고려대	김관수 백경희	'12년 종료
'05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기초의학학 기초의학학	양자시공간연구센터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연구센터 세포기능제어연구센터 여성질환연구센터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이범훈 최진호 성노현 이명석 이혜정	'14년 종료
'07	수학 화학 기초의학학 기초의학학	대수구조 및 응용연구센터 시공간 분자동력학 연구센터 세포다이나믹스 연구센터 생체방어 연구센터	과기원 서울대 광주과기원 연세대	배성한 강 현 전장수 윤주현	'16년 종료
'08	물리학 물리학 화학 농수산 농수산 기초의학학 기초의학학	양자메타물질 연구센터 파장한계 광학연구센터 분자소재 융합계의 전자-광 거동 연구센터 곰팡이 병원성 연구 센터 식품영양유전체 연구센터 골대사 연구센터 신경퇴화제어 연구센터	이화여대 서울대 포항공대 서울대 경북대 서울대 경희대	우정원 김대식 안교한 이인원 최명숙 김홍희 진병관	'15년 종료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비고
'09	수리과학 화학 생명과학 물리학	편미분방정식 및 함수해석학 연구센터 인터페이스 분자제어 연구센터 미토콘드리아 허브제어 연구센터 한국중성미자 연구센터	서울대 과기원 동아대 서울대	이우영 김세훈 유영현 김수봉	'16년 종료
'10	수리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융합과학	은하진화연구센터 세포간신호교신에의한 암제어연구센터 생체막가소성연구센터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센터	연세대 울산과기원 서울대 광운대	이영욱 서판길 호원경 최은하	'17년 종료
'11	자연과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전자정보융합과학	토폴로지 물질 연구센터 기하학 연구센터 후성유전 조절에 의한 세포기능 연구센터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 데이터 과학과 지식 창출 연구센터	포항공대 포항공대 한양대 아주대 서울대	이후종 김강태 채영규 조혜성 이영조	'18년 종료
'12	생명과학	세포항상성 연구센터	이화여대	윤영대	
'14	자연과학	차세대유기합성연구센터	한양대	조천규	
'15	물리학 농수산 물리학 수학 기초/기반 분자 약학	양자메타물질 연구센터 식품영양유전체 연구센터 극미세 초고속 X-선 과학 연구센터 응용해석 및 계산 센터 인간화 돼지 연구센터 터널링 나노튜브 연구센터 메타리셉토 제어 연구센터	이화여대 경북대 광주과기원 연세대 건국대 고려대 중앙대	우정원 최명숙 노도영 최희준 김진희 고영규 오경수	'18년 종료 '18년 종료
'16	물리학 기초생명 수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한국중성미자 연구센터 세포 로지스틱스 연구센터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이질성기반 세포적응 연구센터 당 수식화 네트워크 연구센터 다공성 플랫폼 기반 생체모방 촉매 응집상 양자 결맞음 연구센터 고에너지 천체물리 연구 센터	서울대 광주과기원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기원 과기원 울산과기원	김수봉 전영수 천기상 이명석 조진원 나명수 심홍선 류동수	추가지원
'17	분자생명 화학 기초/기반생명 물리 지구과학	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세포소기관네트워크연구센터 반데르발스 물질 연구센터 은하진화연구센터	성균관대 이화여대 포항공과대 연세대 연세대	배용수 황성주 유주연 임성일 이영욱	추가지원
'18	기반생명 분자생명 지구과학 분자생명 화학 물리학 기초생명 물리학	식물면역연구센터 세포 정체성 연구 센터 비가역적 기후변화 연구 센터 미생물 생존 시스템 연구센터 멀티스케일 카이랄 구조체 연구센터 극한핵물질연구센터 대사스트레스 세포대응 연구센터 토폴로지 물질 연구센터	서울대 과기원 연세대 중앙대 과기원 고려대 울산과기원 포항공대	최도일 이대엽 안순일 이강석 이희승 홍병식 권혁무 이후종	추가지원
합 계	104개 센터 (현재 28개 센터 운영 중)				

● 공학연구센터 : ERC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비고
'90	재료공학 전기전자 전기전자 전기전자 기계공학 화학공학 농 수 산	신소재박막가공 및 결정성장 연구센터 인공지능연구센터 센서기술연구센터 인공위성연구센터 첨단유체공학연구센터 생물공정연구센터 동물자원연구센터	서울대 과기원 경북대 과기원 포항공대 과기원 건국대	주승기 조정완 손병기 성단근 이정목 장호남 김창원	'99년 종료
'91	재료공학 재료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화학공학 농 수 산 기초의약학	재료계면공학연구센터 급속응고신소재공학연구센터 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 터보 동력기계연구센터 신형원자로연구센터 촉매기술연구센터 공장산업지능자동화연구센터 해양산업개발연구센터 신약약품개발연구센터	과기원 충남대 서울대 서울대 과기원 포항공대 포항공대 부경대 서울대	강석중 전병선 권옥현 노승탁 전문현 김영걸 이인범 조규대 주상섭	'00년 종료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비고
'94	생물화학 재료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토목건축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 항공재료연구센터 광전자연구센터 정밀정형 및 금형가공연구센터 초대형구조시스템연구센터	연세대 포항공대 과기원 부산대 한양대	변유량 김낙준 권영세 강충길 이리형	'03년 종료
'97	재료공학 전기전자 전기전자 기계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토목건축	세라믹공정연구센터 미세정보시스템연구센터 초고속광네트워크연구센터 산업설비안전성평가연구센터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 기능성고분자신소재연구센터 지진공학연구센터	한양대 과기원 광주과기원 성균관대 연세대 과기원 서울대	심광보 이귀로 김기선 김영진 박영필 김성철 장승필	'06년 종료
'99	전기전자 컴 퓨 터 기계공학 전기전자 화학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 첨단정보기술연구센터 최적설계신기술연구센터 인간친화복지로봇시스템연구센터 고차구조형유기산업재료연구센터 고기능성자성재료연구센터 환경모니터링신기술연구센터	동국대 과기원 한양대 과기원 서울대 충남대 광주과기원	이진구 황규영 최동훈 변중남 조원호 김종오 김영준	'08년 종료
'00	기초의약학 복합학 전기전자 전기전자 복합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화학공학 화학공학 토목건축	단백질소재연구센터 지능형생체계면공학연구센터 광인터넷연구센터 가상현실연구센터 초미세생체전자시스템연구센터 연소기술연구센터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센터 전자패키지재료연구센터 플라즈마응용표면기술연구센터 유변공정연구센터 조정밀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 첨단도로연구센터	조선대 서울대 정보통신대 과기원 서울대 과기원 한양대 과기원 성균관대 고려대 인하대 한양대	함경수 정종평 강민호 원광연 김성준 신현동 김종경 유 진 한전건 현재천 구윤모 장명순	'09년 종료
'01	화학공학 복합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초미세화학공정시스템연구센터 생체계측신기술연구센터 차세대전력기술연구센터 마이크로열시스템연구센터	과기원 서울대 명지대 서울대	우성일 박광석 이승재 이준식	'10년 종료
'02	농수산 토목건축 화학공학 복 합 학 기계공학 전기전자	형질전환복제대지연구센터 스마트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에너지변환저장연구센터 임피던스영상신기술연구센터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생체인식연구센터	충남대 과기원 서울대 경희대 부산대 연세대	박창식 윤정방 오승모 우응제 전호환 김재희	'11년 종료
'03	전기전자 화학공학	집적형광자기술연구센터 차세대바이오환경기술연구센터	인하대 포항공대	이일항 박종문	'12년 종료
'05	화학공학 전기전자 재료공학 토목건축	지능형텍스타일시스템연구센터 지능형RF연구센터 자기조립소재공정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센터	서울대 정보통신대 국민대 한양대	강태진 박철순 이재갑 신성우	'14년 종료
'07	화학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기초의약학	패턴집적형능동폴리머소재센터 차세대플렉시블디스플레이융합센터 인간중심제품혁신연구센터 대사및염증질환신약개발연구센터	연세대 과기원 고려대 서울대	김은경 최경철 채수원 김상건	'16년 종료
'08	재료공학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공학 화학공학 토목건축 복합학 복합학	고효율무기박막태양전지연구센터 기능성소재융합플랫폼연구센터 소프트웨어무결점연구센터 핵융합로공학선행연구센터 차세대열료감응태양전지연구센터 지속가능건강건축기술연구센터 종양의료개인특화를위한기기시스템연구센터 통합형 휴먼센싱 시스템 연구센터	과기원 경북대 서울대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충북대 한양대	안병태 강신원 이광근 황용석 강용수 김정태 김원재 주재범	'15년 종료
'09	의약학 전자정보 공학기반 융합과학 융합과학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 다중현상 CFD연구센터 테라헤르츠파기반 생체응용시스템연구센터 기후/환경 변화예측 연구센터	연세대 연세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최강열 서승우 허남건 박건식 박선기	'16년 종료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비고
'10	화학·화공 공학기반 전자정보	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연구센터 TOD기반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풍력에너지 전력망적용기술연구센터	성균관대 아주대 전북대	이두성 최기주 강용철	'17년 종료
'11	건설/교통 기계 소재 전기전자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국부투자영상과 햅틱기반 수술용 로봇기술 연구센터 메카트로닉스 융합 부품 소재 연구센터 홀로-디지로그 휴먼미디어 연구센터	연세대 포항공대 창원대 광운대	정상섬 정완균 이재현 김은수	'18년 종료
'12	기계	설계기반 미래성형 기술개발	부산대	강범수	
'13	기계	차세대 우주추진 연구센터	서울대	윤영빈	
'14	통신 화공	무선 에너지 하비스팅 통신 융합 연구센터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 센터	성균관대 경희대	김동인 김우식	
'15	바이오의료융합 기계 건설/교통 소재 융합연구 전기/전자	통합형 휴먼센싱 시스템 연구센터 초정밀 광 기계기술 연구센터 건설구조물 내구성 혁신 연구센터 전략 구조소재 신공정 설계 연구센터 최소침습 정밀표적치료 연구센터 유연 열전 반도체 소자기술 센터	한양대 연세대 한양대 서울대 경희대 한국과학기술원	성기훈 강신일 이한승 권동일 박현국 조병진	'18년 종료
'16	기초의학 바이오의료융합 화공 에너지환경융합 정보기술융합 소재 기계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 나노-생체유체 검사 연구단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자율운전 소형모듈형 원자로 연구센터 하이브리드 디바이스를 이용한 일주기 ICT 연구센터 웨어러블 플랫폼소재 기술센터 인간중심 소프트로봇기술 연구센터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과기원 국민대 과기원 서울대	최강열 신세현 고려영 김용희 김대환 배병수 조규진	추가지원
'17	건설/교통 전기/전자 기계 통신 산업수학 정보기술융합 화공	스마트 수중 터널 시스템 연구센터 인체부착형 빛 치료 헬스케어 공학 센터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지능형 바이오메디컬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 빅데이터 기반 금융·수산·제조 혁신 산업수학센터 수학기반 산업데이터해석 연구센터 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상대 충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행기 유승협 명노신 서철현 김현민 천정희 이두성	추가지원
'18	건설/교통 화공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 소재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소프트웨어 소재	지능형 건설자동화 연구센터 코팅기반 화학공정 연구센터 자성기반 라이프케어 연구센터 태양광 에너지 지속가능 활용 연구센터 인공지능 활용 이오닉스 기반 소재개발 플랫폼 연구센터 MARS 인공지능 통합연구센터 암흑데이터 극한활용 연구센터 메카트로닉스 융합 부품 소재 연구센터	경북대 서울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 전남대 과기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창원대	이동은 안경현 김철기 진성호 김재국 오혜연 김민수 이재현	추가지원
합 계	119개 센터 (현재 30개 센터 운영 중, 2개 센터 중단)				

● 기초의과학연구센터 : MRC

선정연도	구분	센터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비고
'02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세포사멸질환 연구센터 활성산소에 대한 생체반응 연구센터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 암분자치료 연구센터 중앙 면역 의과학 연구센터 만성대사성질환 연구센터 전정와우기관 연구센터 유전자 제어 의과학 연구센터 알레르기성 면역질환연구센터 동통과 신경손상 연구센터 신경 세포 흥분성 조절 연구 센터	가톨릭대 경희대 계명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성균관대	김 진 김성수 박종욱 곽종영 김철우 김경섭 박래길 김경근 이현구 조희중 박주배	'11년 종료
'03	응용의학 기초의학 치의학 기초의학	유전체 및 단백질체 환경독성 연구센터 만성 염증질환 연구센터 구강악안면 경조직 재생 연구센터 내성세포 연구센터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조선대	이은일 주일로 김경남 최철희	'12년 종료
'05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신경기능장애 연구센터 허혈조직재생 연구센터 노인성혈관질환 연구센터 감염성질환제어 연구센터 심혈관계질환 천연물개발연구센터	경상대 부산대 영남대 한림대 동국대	최완성 김치대 김재룡 송동근 박원환	'14년 종료

선정연도	구분	센터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비고
'07	한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암예방소재개발연구센터 맞춤치료를 위한 생체치표 연구센터 감염신호네트워크응용연구센터 신호전달장애 연구센터	경희대 인제대 충남대 충북대	김성훈 신재국 조은경 김응국	'16년 종료
'08	치의학 치의학 기초의학 한의학 기초의학 치의학 약학 기초의학	두개안면 기능장애 연구센터 구강악안면 노인성 기능장애 연구센터 세포기능장애 연구센터 한방체액조절 연구센터 당뇨질환 연구센터 노인구강질환제어 연구센터 혁신 암치료제 연구센터 줄기세포 행동제어 연구센터	경북대 서울대 울산대 원광대 전북대 조선대 충북대 한양대	배용철 박경표 김동호 이호섭 박병현 고영무 홍진태 이상훈	'17년 종료
'09	약학 약학	내인성리간드 신호전달조절 항암제 연구센터 분자염증 노화제어 연구센터	서울대 부산대	김영식 정해영	'18년 종료
'10	약학 기초의학	에피지놈 제어 연구센터 조직손상 방어연구센터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정환 이지희	
'11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약학 한의학 치의학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신경면역 정보저장 네트워크 연구센터 유전자 제어 의과학 연구센터 대사조절 유전체 통합연구센터 활성산소 기초의과학 연구센터 세포운명조절 연구센터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 Biomaterialization 장애 연구 센터	원광대 서울대 전남대 연세대 경희대 숙명여대 대구의한대 전남대	소홍섭 김상정 김경근 김경섭 김성수 류재하 김상찬 고정태	'18년 종료
'12	치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연구센터 암진화 연구센터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	경희대 가톨릭대 아주대	김은철 이석형 주일로	
'14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의학 한의학	저산소 표적질환 연구센터 비만 매개 질환 연구센터 종양 이형성 및 네트워크 제어 연구센터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	인하대 계명대 경북대 부산대	박한주 송대규 이병현 하기태	
'15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센터 혈관성 질환 유전자세포치료 연구센터 스마트에이징 융복합연구센터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조선대 부산대 영남대 경상대	유호진 황태호 김재룡 노구섭	
'16	치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미각연구센터 툴유사수용체 기반 질병 연구 센터 말초신경병증 연구센터 단일세포 네트워크 연구센터	연세대 건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문석준 박영민 박환태 주경민	
'17	약학 기초의학 치의학 기초의학 한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약학	종양 이환 네트워크 연구센터 대사염증 연구센터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세포내외 노화 및 병적환경개선에 의한 조직재생 촉진 연구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감염 제어 컨버전스 연구센터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자기방어 연구센터 뉴로바이오타 연구센터	충북대 전북대 경북대 한양대 원광대 충남대 연세대(원주) 경희대	홍진태 박병현 배용철 이상훈 이호섭 조은경 박규상 김동현	
'18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약학 약학 약학 치의학 치의학 한의학	줄기세포 면역제어 연구센터 결핵 정밀맞춤치료 선도연구센터 복합암면역치료 연구센터 만성난치질환 시스템의학 연구센터 기억 네트워크 연구센터 암 관해 표적제어 혁신의약품 연구센터 생체지질 인터랙토믹스 연구센터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치주질환신호 네트워크 연구센터 치아-치주 복합체 연구센터 간질환 한약 융복합활용 연구센터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대구의한대학교	김승후 신재국 이준행 김재우 김상정 이경 이미옥 이윤실 박혜련 오석배 김상찬	
합계	78개 센터 (현재 35개 센터 운영, 1개 센터 중단)				

● 융합연구센터 : CRC

선정연도	구분	센터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비고
'03	NCRC	환경생명과학연구센터 나노응용시스템연구센터	경상대 서울대	이상열 박영준	'10년 종료
'04		나노메디컬연구센터 시스템바이오 다이내믹스 연구센터	연세대 포항공대	유경화 황대희	'11년 종료
'06		세포신호전달계 바이오의약 연구센터 하이브리드 소재솔루션 연구센터	이화여대 부산대	이공주 김광호	'13년 종료
'08		극한광응용기술 연구센터	광주과기원	노도영	'15년 종료
'09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융합 연구센터	성균관대	유지범	'16년 종료
'10		개인용 플러그 앤 플레이 전기자동차 시스템 바이오 정보의학 연구센터	한국과기원 서울대	권인소 김주한	'17년 종료
'11	GCRC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핵심 연구센터 중앙미세환경 연구센터	부산대 서울대	전호환 서영준	
'15	CRC*	사이언스 월드 모듈형 스마트 패션 플랫폼 연구센터	울산과기원 국민대	조재원 이재갑	
'18	CRC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Googi) 개발 인류세 연구센터 생존 신호정보 연구센터 초연결사회위험관리를위한빅데이터기반사회환경실시간 모니터링/사회시뮬레이션시스템	동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임중연 박범순 김태원 차재혁	
합계	18개 센터 (현재 8개 센터 운영 중)				

* 2015년 10개 과제 선정 뒤 2017년 단계평가를 통해 2개 과제 선정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통합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문의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공고자료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
내용을 숙지



주관연구기관에 먼저 문의

공고내용을 숙지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관리부서에 문의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입력 및 제출 관련
 -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1544-6118로 문의 요망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 한국연구재단 신규사업 통합안내 ☎ (042)869-6365
 -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 (042) 869-6826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RLRC 담당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선도연구센터	6557	6533	6055	6542	6566